

『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4차)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1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2월 18일

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○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

구미가 배출한 야은 길재선생의 정신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 하고 의의를 계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< 당 초 >

- 토 지 : 57,474m² (남통동 248번지 외 6필지)
- 건 물 : 1,628m² (서원 등 12개동)
- 기 준 가 격 : 10,579,873천원

< 변 경 >

- 토 지 : 2,197m²(남통동 산33필지 외 4필지)
※ 3필지 931m²는 시유지
- 건 물 : 401.06m²(수양각 외 3건)
- 기 준 가 격 : 3,393,396천원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계획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과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」 등 관련법규에 의거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건립부지 남통동 산33번지 외 4필지 (2,197m²/3필지는 시유지)를 매입하는 것과 수양각, 혼자실, 영상실 등의 건물(401.06m²)을 신축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▪ 본 계획안은

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은 사항으로 2013년 4~6월까지 감사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재정사업실태 점검에서 유사사업 축소 대상으로 지적되어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10조, 『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.

-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은 구미가 배출한 야은 길재 선생의 정신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 하고 얼을 계승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취득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